

법원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공법 무단 변경”

광주지법, 피고·법인 20명 1심 선고 원청 현산-하청업체 공방 끝 3년 만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경영진 무죄 “콘크리트 타설 관리·감독 부실 인정”

법원이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공법 무단 변경을 지목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가현건설,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장 책임자 17명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열고 20명의 피고와 법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번 재판은 원청과 하청 간에 과실을 미루는 긴 공방 끝에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현산과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감리를 비롯한 책임자 6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5년간 유예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이유로 현산 전 대표이사과 하청사 대표 등 경영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현산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를 내 하청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3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산과 가현건설의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무단변경한 점과 하부 38층 하부에 설치된 동바리 철거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사전 검토 없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하중의 증가 및 하중 전달 경로가 변경돼 30톤의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에 설비(PIT)층 바닥이

개입되지 않은 하중으로 작용, 설계 영향을 고려한 하중에 비해 약 2배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설비층 바닥이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와 무게에 전달되는 타설 하중을 견디기에는 무리였고 설비층 바닥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붕괴가 시작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콘크리트 강도 부분과 관련해 2~3

개의 층이 한번에 연쇄 붕괴가 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연쇄 붕괴는 보일 것으로 보여 참사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형량을 살펴보면 건설 공사의 원청인 현산의 현장 총 책임자인 이모(53) 전 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현산 측 2명에게는 과실 정도와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감리를 맡은 광장 소속의 현장 감리와 총괄 감리 등 3명에게는 비교적 과실 책임이 크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징역 1~3년과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향후 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이 미완공돼 수분양자들과 인근 상가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을 모두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피해자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모두에 대해 공평된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산 측 관계자가 동바리 해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고 당일 타설 공정 하부 3개 층에 동바리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당연한 상식이라는 이유로 예상을 하지 못했고 몰랐다는 것은 오히려 사실상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실형

길에서 만나 시비 붙어 ‘격분’

평소 갈등을 빚다 퇴사 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직장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30분

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에서 4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채 쓰러졌고,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과거 같은 주점에 일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A씨가 퇴사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으로 욕설한 B씨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법적 상속인인 친모가 합의했으나, B씨의 친동생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친모가 오래전부

터 떨어져 지내며 실제 양육하지 않아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 기준상 특별 감경요소로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점을 참작,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며 “퇴사 이후에도 B씨가 상당 기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경위는 있어보이는 점과 다만 바닥에 쓰러진 B씨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만약 빠른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 도심서 무면허 역주행 70대 남성 검거

광주 도심에서 면허가 박탈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무면허로 차량을 몰며 도로를 역주행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승용차를 몰며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준명 기자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드론타임 010-5681-8084

분양계약서 분실공고
 계약자: 박희민
 주소: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636번지 일원, 고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17동 802호
 연락처: 010-6204-6339

분양계약서 분실공고
 계약자: 임계선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로로 87번길 15 아델리움로제비앙 107동 1201호
 연락처: 010-2621-6259

공급계약서 분실공고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폐상길 246
 계약자: 정홍석
 연락처: 010-4624-2307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5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5년 1월 14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주식회사 동양파라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76, 107(상가1동)동 지하1층 103호(10호) (주월동, 주월동이지터원아파트1단지) 청산인 이 동 진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5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5년 1월 14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주식회사 동양오승개발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서탑1길 7-1 (서동) 청산인 안 지 훈

광양시 공고 제2025-1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덕산지구) 기간연장을 위한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광양읍 덕레리 덕산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 1. 21. 광 양 시 장

1. 위 치: 광양시 광양읍 덕레리 1214 일원
2. 면 적: 431,273㎡
3. 제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56조 규정에 의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취 등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허용)
4. 제한사유: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예정지역으로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5. 제한기간: -당 초: 2022. 2. 17. ~ 2025. 2. 17.(3년) -변 경: 2022. 2. 17. ~ 2027. 2. 17.(5년)
6. 공람기간: 2025. 1. 21. ~ 2025. 2. 4.(14일간)
7. 관계도면 및 세부조서: 게재 생략
8.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광양시청 도시과
9. 본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직통: 062-519-0710
 全南日報

부동산매매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17 6968㎡(2108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892-4 550㎡(166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20-1 3973㎡(1202평) = 11491㎡(3476평) 9억원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 2386㎡(722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3 44㎡(13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창 919-14 1072㎡(324평) = 3502㎡(1059평) 3억원

전체합계 14,993㎡(4535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에서 진출입가능
010-9119-4981